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88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사무명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나.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의 출연금으로서 회계연도별 지방소비세 세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출연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도의 안분액 × (35/100)

2) 출연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출연 근거 규정이 있는 법정 출연금
- 2010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의 출연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여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다. 출연 사무 내용

- 1)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 2)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및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공사채의 인수 등

라. 출연 기관 개요

- 1) 기 관 명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 2)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공덕동, 지방재정회관 3층)
- 3) 규 모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구성

구 분	정·현원	인원수	세부 내용
조합위원	정원	23인	시·도 기획조정실장 또는 국장(17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1),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1),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2인), 균형발전전문가(2인)
	현원	23인	시·도 기획조정실장 또는 국장(17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1),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1),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2인), 균형발전전문가(2인)
사무직원	정원	4인	조합원 파견공무원 5급(1인)·6급(1인)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직원 또는 조합원 파견공무원 6급(2인)
	현원	4인	조합원 파견공무원 5급(1인)·6급(1인) 한국 지방재정공제회 직원(2인)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사무실 면적 : 108.9㎡(33평, 임차 사무실)

4) 위치도



<위 치 도>



<지방재정회관 건물>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2023년 출연금 편성액(안) : 283,903,009천원

※ 2023년 지방소비세 중기재정전망에 따른 잠정액으로서 추후 변동 가능

2) 2023년 산출근거(안)

- 681,400,000천원(기금 출연 대상 지방소비세) × 35% + '21년 기금 정산분
45,413,009천원

※ 기금 출연 대상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 인상 10%분(약 9.9조원)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지방 이양에 따른 보전분 등
(약 4.5조원)을 제외한 잔여분(약 5.4조원)에 서울시 안분율(12.724%) 적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재정담당관 보조금관리팀 김수진 (☎ 2133-6883)